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재가단1001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2재가단1001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05279 판결

전문

원고(재심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재심원고)1. G

2. C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오경훈

변론 종결2024. 10. 24.

판결 선고2024. 11. 21.

재심대상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단105279 판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C(재심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7.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3,3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재심원고)은 원고(재심피고)에게 각 7,777,7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 C(재심피고)와 망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7.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23,333,333원인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들(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각 7,777,7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상회복에서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망 B을 상대로 이 법원 2021가단105279호로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망 B과 피고 C 사이에 2017.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B은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망 B에게 송달이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이루어지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망 B에게 송달된 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망 B은 2021. 7. 25.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에서 B의 사망으로 소송상 지위를 승계할 때까지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망 B에게 송달되고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대리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고 봄이 타당하다.

3. 제척기간도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3. 22.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채무자인 피고 C와 관계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변동 역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2017. 3. 16.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2. 16.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약과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점에 대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 피보전권리(갑1 내지 갑4)

주식회사 E은 2015. 6. 25. 피고 C에게 4,500만 원을 대출이자율 연 28.90%, 연체이자율 연 34.9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가 대출금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자,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2570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89,652,81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 사해행위(갑8, 갑9)

피고들의 아버지인 F은 2016. 12. 5. 사망하였는데, F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5.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2017. 3. 16.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받았다.

- 피고 C가 무자력인 점은 다툼이 없다.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피고 C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2017. 3. 5.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망 B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은 망 F과 망 B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망 F의 사망후 망 B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B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고, 피고 C가 그 무렵 수입차딜러를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고 할 것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B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라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2017. 3. 5.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임부분에 해당하는 23,333,333원부분에 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원상회복

- 별지 기재 부동산은 사해행위이후 N에게 2021. 7. 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9). 따라서 피고들이 N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별지 기재 부동산이 2021. 6. 24. N에게 225,000,000원에 매도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O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에 의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2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105,000,000원(=225,000,000원-120,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 C의 상속지분 상당액 23,333,333원(=105,000,000원×상속지분 2/9)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 부분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120,266,723원)과 책임재산액(23,333,333원) 중 더 적은 23,333,333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B의 사망으로 위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피고들에게 각 7,777,777원(23,333,333원×1/3)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상속지분에 따른 7,777,777원 가액반환채무는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수익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수익자인 B가 사망하여 그 가액배상의무를 피고 C가 상속받아 피고 C는 원고에게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재심청구는 결론적으로 이유 없으나, 원고가 원상회복을 구하다가 가액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성우

별지